

# 진로준비반 운영지침

제정 2018. 09. 01.

개정 2021. 09. 01.

개정 2023. 02. 17.

개정 2024. 05. 22.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『재판연구원, 검찰, 법무법인(법률사무소 포함), 기업체/공공기관 사내 변호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(이하 ‘재학생등’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 해당 직역 취업을 위한 준비반』(이하 ‘진로준비반’이라 한다)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진로준비반 지원 신청)

- ① 진로준비반은 1학년 2학기부터 지원 가능하며, 1학기는 개강 후 3월 말까지, 2학기는 개강 후 9월 말까지 입반을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2.17.)
- ② 진로준비반은 재판연구원 준비반, 검찰 준비반,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등 준비반(이하 ‘로펌 준비반’이라 한다), 기업체/공공기관 사내변호사 준비반(이하 ‘사내변호사 준비반’이라 한다)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복수 지원은 불허한다. (개정 2023.02.17.)
- ③ 이미 가입된 진로준비반에 대하여 1학기는 3월 말까지, 2학기는 9월 말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2.17.)
- ④ 진로준비반 신규 지원(변경) 신청양식은 별표 1과 같다.

## 제2조의 2 (진로준비반 선발)

- ① 신청서 내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서 내용을 참작하여 지도교수의 재량으로 선발한다. 단, 예비종합시험 1과목 이상 미 응시자는 1년 간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4.5.22.>
- ② 진로준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비반별 학기당 선발 인원은 지도교수의 재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 (본조 신설 2023.02.17.)

## 제3조 (진로준비반 지원 신청의 접수 및 결재)

진로준비반의 지도교수, 교무부원장, 원장의 결재를 받아 1학기에는 4월 둘째 주에, 2학기에는 10월 둘째 주에 재학생들에게 진로준비반 배정내용을 공지한다.

## 제4조 (진로준비반 지도교수의 선임 및 임기)

- ① 진로준비반 지도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선임한다.
- ② 진로준비반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5조 (진로준비반 지도교수의 역할 및 그 밖의 지원 방안)

- ① 진로준비반의 지도교수는 개인지도와 집단지도를 병행하여 해당 준비반을 지도할 수 있다.
- ②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진로준비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진로준비반 지도교수가 각자 담당한 재판연구원 준비반, 검찰 준비반, 로펌 준비반, 사내변호사 준비반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 <삭제>

제7조 (보칙)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진로준비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 2023.02.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 2024.5.22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개정 지침 중 제2조의 2(진로준비반 선발)의 개정 사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